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4조 (위원의 선출 등)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u>만료일 10일</u>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u>만료일 전</u> 일까지 선출한다.	제34조 (위원의 선출 등)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u>개시일 7일</u>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u>개시일 전</u> 일까지 선출한다.		교육자치과 -2281 (2018.03.19.)	
제48조 (회의의 공개 등)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u>교원</u> , 지역주민 등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회의의 공개 등)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u>교직원</u> , 지역주민 등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등)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u>교원</u>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회의록 작성 등)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u>교직원</u>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 (운영 경비 및 자생 조직 등)	① 위원회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u>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에</u> 따른다.	제51조 (운영 경비 및 자생 조직 등)	① 위원회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u>공무원 여비규정에</u> 준하여 지급한다.			
제9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생략 ② <u>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학교 법인의 이사 또는 교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	제93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u>현행과</u> 같음 ② <u>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u> 1. 해당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정책기획관 -3503 (2018.04.12.)	

현행	개정안	비고
③ (신설)	<p>③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93조의2 (신설)	<p>제93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②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0조의2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p>정책기획관 -3503 (2018.04.12.)</p>
제100조의2 (신설)	<p>제100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p>	